

#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0. 23.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10. 13. /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5. 10. 14.

다. 상정일자: 제279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25. 10. 23.)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징수과장 장혜경】

### 가. 제안이유

-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유공납세자 선정(안 제3조)
- 유공납세자 우대 및 지원(안 제4조)
- 유공납세자 선정 등의 취소(안 제5조)
- 유공납세자 사후 관리(안 제6조)
- 시행규칙(안 제7조)

### 3. 검토보고(전문위원 권하나)

#### 가. 제정 목적

- 동 조례 제정안은 2025년 10월 1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제정 취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유공납세자 제도는 납세자들이 구세를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하는 유인 제도로, 유공납세자 우대 및 지원을 통해 자진납세를 촉진하는 등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서울시 및 자치구 18곳에서 모범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으며, 국세청 또한 모범납세자<sup>1)</sup>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 나. 조문 검토

- 본 제정 조례안의 본칙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례안의 구성 체계>

조항	주요내용
제1조(목적)	유공납세자 우대 및 지원을 통한 납세문화 확립과 자주재원 확보
제2조(정의)	지방세 및 유공납세자 정의 규정 (체납 없음, 일정 납부 실적 등 요건 명시)
제3조(선정)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연 1회 선정, 타 기관 모범납세자 중복 제외
제4조(우대 및 지원)	표창, 주차요금 면제, 세무조사 면제 등 우대 지원 규정
제5조(선정 등의 취소)	탈세·체납 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제6조(사후 관리)	유공납세자 명부 관리 및 기록 유지 의무
제7조(시행규칙)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1) 2023년 기준 1,065명 신규 선정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고,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 및 ‘유공납세자 대상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조례 적용의 범위를 구체화함.

**< 서울시 및 마포구 선정기준 비교 >**

구 분	선정 기준	비고
서울시 모범납세자	-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사람	서울시 전역 기준
서울시 유공납세자	-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마포구 유공납세자	-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마포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 ②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b>법인은 1천만원 이상, 개인은 3백만원 이상인 납세자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자</b>	마포구 실정 반영

- 마포구 유공납세자는 서울시 모범납세자 중 일정 금액 이상의 구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별도 선정하여 지역 차원의 우대·지원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 2025년 마포구 유공납세자 대상자 현황 >**

구 분	선정 기준	인원(명)
법 인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1천만원 이상	79명
개 인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3백만원 이상	471명
합 계		550명

※ 유공납세자 대상자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최근 3년간 서울시 모범·유공납세자 중 마포구민 현황을 보면, 모범납세자 대비 유공납세자 비율이 낮아, 일정 금액 이상의 구세 납부자를 별도로 '마포구 유공납세자'로 선정하여 실질적인 우대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최근 3년간 서울시 모범·유공 납세자(마포구민) 현황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모범납세자 <sup>2)</sup>	8,921명	9,902명	11,086명
<b>유공납세자</b>	<b>7명</b>	<b>6명</b>	<b>6명</b>
합 계	8,928명	9,908명	11,092명

- 안 제3조에서는 유공납세자의 선정 절차 및 서면 안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선정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며, 서울시 모범납세자 또는 국세청 모범납세자로 이미 선정된 자는 중복 선정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하도록 규정함.
- 안 제4조에서는 선정된 유공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표창 수여, 주차요금 면제, 세무조사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으며, 타 자치구 대비 선정 기준은 완화되었으나 혜택 수준은 상대적으로 우대된 구조로 평가됨. 이는 마포구의 재정 여건과 지역 납세 기반을 고려한 조정으로 당장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재정 상황 및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세부기준 조정이 필요함. (타 자치구 현황은 붙임 1 참조)

2) 모범유공자 대상자 수로 모범유공자로 선정된 수는 다를 수 있음.

- 안 제5조에서는 유공납세자 선정 취소 사유를 규정하여, 선정 이후 탈세나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의 취소 및 지원 중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6조에서는 유공납세자 명부의 관리 및 사후관리 절차를 명시함. 이는 선정 이후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명부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시행규칙 또는 내부지침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다. 종합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일정 금액 이상의 성실한 지방세 납부자를 유공납세자로 선정하여 우대·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본 조례안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납세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 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국세청이 최근 모범납세자 제도의 혜택을 축소하고 명예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점을 고려<sup>3)</sup>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구 차원의 지원 제도 역시 재정 부담과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운영이 요구됨.

3) 강민수 국세청장, 2024.7.16. 국회 인사청문회 발언: “모범납세자 제도는 존치하되, 혜택은 축소하고 명예 중심으로 개선 검토 중”

‘모범납세자’ 혜택 과도?...국세청, 실효성 검증 나서: 전자신문, 2025-05-22

국회예산정책처도 2023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에서 모범납세자의 탈세 현황이 포착되는 등 모범납세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성실하게 납세함에도 모범납세자 선정이나 혜택에 있어 불리한 측면을 고려해 모범납세자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아울러, 유공납세자 선정 이후 탈세나 체납 등의 사유로 선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sup>4)</sup>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엄정한 검증 절차와 체계적인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함.
- 따라서 본 조례 시행 시에는 투명한 선정 기준과 사후관리 절차를 시행규칙에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공정성·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4)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모범납세자 선정 취소자는 총 76명으로, 이 중 ▲국세 체납으로 인한 취소 33명,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또는 조세범 처벌 등으로 인한 취소 4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2023년 한 해 13명).

# 붙임 1

## 타 자치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제정 현황

(‘25. 7월 기준)

연번	자치구명	조례명	제정 시기	선정기준	지원내용
1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2022.1.6.	법인: 5백만원 이상 개인: 2백만원 이상	주차요금 1년 면제 세무조사 3년 면제
2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2020.11.6.	법인: 5백만원 이상 개인: 2백만원 이상	주차요금 1년 면제 세무조사 3년 면제
3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2024.5.20.	법인: 3천만원 이상 개인: 1천만원 이상	주차요금 1년 면제 세무조사 3년 면제
4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2017.7.13.	법인: 5천만원 이상 개인: 1천만원 이상	주차요금 1년 면제 세무조사 1년 면제
5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2021.10.7.	법인: 5천만원 이상 개인: 1천만원 이상	주차요금 1년 면제 세무조사 1년 면제
6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2018.10.1.	법인: 5천만원 이상 개인: 1천만원 이상	주차요금 1년 면제 세무조사 3년 면제
7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2019.7.10.	법인: 3천만원 이상 개인: 5백만원 이상	주차요금 1년 면제 세무조사 1년 면제
8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2018.12.13.	-	세무조사 1년 면제
9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	2017.12.14.	법인: 5천만원 이상 개인: 1천만원 이상	서초수련원 휴양소 이용 주차요금 1년 면제
10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8.4.	법인: 5천만원 이상 개인: 1천만원 이상	주차요금 1년 면제 세무조사 1년 면제
11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0.16.	법인: 5천만원 이상 개인: 1천만원 이상	주차요금 1년 면제 세무조사 1년 면제
12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2017.10.12.	법인: 5천만원 이상 개인: 1천만원 이상	세무조사 1년 면제
13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2016.7.14.	법인: 5천만원 이상 개인: 1천만원 이상	주차요금 1년 면제
14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2017.9.22.	법인: 5천만원 이상 개인: 1천만원 이상	주차요금 1년 면제 세무조사 3년 면제
15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2017.7.5.	법인: 5천만원 이상 개인: 1천만원 이상	주차요금 1년 면제 세무조사 3년 면제
16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2021.10.29.	법인: 3천만원 이상 개인: 1천만원 이상	주차요금 1년 면제 세무조사 1년 면제
17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2017.4.27.	-	주차요금 1년 면제 세무조사 1년 면제 10만원이내 상품권
18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2024.11.14.	법인: 1천만원 이상 개인: 5백만원 이상	주차요금 1년 면제 세무조사 1년 면제
-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안	2025.8.	법인: 1천만원 이상 개인: 3백만원 이상	주차요금 1년 면제 세무조사 3년 면제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2021. 1. 12., 2021. 12. 28., 2023. 12. 29.>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② (생략)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 ④~⑥ (생략)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2023. 3. 14.>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3.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감치에 관한 사항
6.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8.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